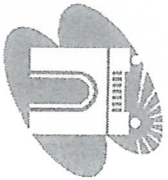


등록번호	보육가목과-425/1
등록일시	2011.08.14.
결재일자	2011.08.15.
공개구분	공개

주무관	보육행정팀장	보육가목과장	보육팀장	박구정	구장(의견) ()
박미영	오남희	정유진	임진숙	() ()	09/15
협조	예산팀장 행정지원과장 복지노무팀장 주무관	김홍 서정식 김민철 안주열	장덕기(담당관)		승선호

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변경 운영 계획



서대문구 보육가족과

서대문구청직장어린이집 변경 운영 계획

우리 구 직원들의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지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제3별관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경원이 못미치는 현원중심 운영으로 비효율적인 구버거원 예산을 합리적인 안으로 개선하고 업무의 단일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행정지원과의 예산지원 업무를 보육가족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설치개요

i.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2항」 <보육의 우선제공 : 직원(녀) 1/3이상>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제2항」 <사업주 비용보조 : 필요비율 50%이상>
- 총무과-458(2009.1.8)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

ii. 설치현황

- 위 치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91번지(연희동 143-1, 제3별관)
- 규 모 : 지상 1.2층 / 356.24㎡
- 보육정원 : 49명
- 개 원 일 : 2009. 8. 2(인) / 2009. 7. 1)
- 위 탁 체 : SAVE THE CHILDREN

iii. 추진경과

- 2008. 10 -----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 총무과
- 2008. 11 ----- 2009년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 편성 ----- 총무과
- 2009. 5 ~ 7 ----- 직장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공사 ----- 총무과
- 2009. 6 ~ 7 -----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 보육가족과
- 2009. 8 ----- 직장어린이집 개원 ----- 보육가족과

II 운영현황

I. 아동현황

구분	정원	현원	직원아동	한부모아동	일반아동
아동수	49	40	27	2	11

* 2011. 8월부터 일반아 입소 기능토록 시설 오픈할 것을 구두 지시하여 예산 감액지원 대비

II.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시설장	보육교사	시간연장교사	비담임	취사부	기타
종사자수	10	1	6	1	1	1	

III. 연간 운영 예산

■ 보육시설 임차료

○ 연52,140천원(월4,345천원 / 건물전체 연104,280천원)

■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 연250,212천원(223,128천원/구비지원액)

☞ 월20,851천원(구비:18,594천원, 보조금 지원액:2,256천원) × 12개월

○ 서대문구청작정어린이집 월 지원내역

건명	인원수	금액	예산구분	종별	비고
계		20,851,080			
인건비(1)	9명	17,254,820	구비100%	시설장,보육교사,취사부,비담임	80%계약
인건비(2)	1명	1,386,260	구30:시49:구21%	시간연장반교사	
시설장직책수당	1명	150,000	구비100%		
비담임수당	1명	50,000	구비100%		* 지급근거 : -보건복지부지침 -서울시지침
시간외수당	6명	600,000 (100,000*6)	구비100%		-2011 구비지원 사업계획에의거 금액 불가
교사종식비	8명	200,000 (25,000*8)	구비100%		
시설장취우개년비	1명	195,000	구비100%		
비담임취우개년비	1명	145,000	구비100%		
보육교사취우개년비	6명	870,000	시50:구50%		

III 변경운영사항

■ 예산 변경 운영

○ 2011.10.1일부터 인건비 지원액 구비 100%에서 80%지원으로 변경

* 일반구립보육시설과 동일 지원

○ 일반아 보육에 따른 정원 총족으로 구비 감액에 의한 절감액 총원

☞ 80% 지원에 따른 구비 절감액 연 41,411,568원

* 17,254,820 × 20% × 12개월 = 41,411,568원

■ 정원 변경 운영

○ 직장보육시설의 직원자녀 100% 정원 규정을 일반아 30% 모집 변경

☞ 정원 대비 직원자녀수 27명에 따른 보육아동 수의 부족으로 보육료

수입부족액을 일반아로 충원하여 구비 감액분 보전

☞ 직원자녀 우선 보육하되 정원에 채워지지 않은 여유인원을 일반 주민자녀

에게도 입소기회를 주어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보육장원의 1/3(상)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이어야 함」

- 위 지침사항에 따르면 정원 49명 대비 직원자녀 27명을 제외하고 최대 22명을 일반아동
을 보육할 수 있으나 정원의 30%인 14~15명만 일반아동을 모집하여 추후 직원자녀에게
보육의 우선기회를 주고자 함

○ 일반아동 원아모집 시기 : 2011년 8.1일부터 일반아동 원아모집 및 보육

■ 2012년 직장보육시설 예산편성 및 지원부서 변경

○ 행정지원과 → 보육가족과

☞ 운영 및 관리는 보육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예산 지원은 행정지원과에서 담당
하여 이원화 되어있던 업무체계를 일원화하여 서대문구청작정어린이집의
지도감독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